

보건부

No.1644/QĐ-BY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26년 6월 8일

결 정

보건부 소관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에 규정된
식품안전 분야의 수정·보완 행정절차 공포

보건부 장관

보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체계를 규정한 「2025년 2월 27일자 시행령 제42/2025/NĐ-CP호」에 의거하여,

「행정절차 통제에 관한 2010년 6월 8일자 시행령 제63/2010/NĐ-CP호」, 「행정
절차 통제 관련 시행령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2013년 5월 14일자 시행령 제48/2013/NĐ-CP호」 및 「행정절차 통제 관련 시행령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2017년 8월 7일자 시행령 제92/2017/NĐ-CP호」에 의거하여,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
에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에 의거하여,

「행정절차 통제 업무 지침에 관한 2017년 10월 31일자 시행규칙 제 02/2021/TT-VPCP호」에 의거하여,

식품안전국 국장의 제청에 따라,

결정:

제1조.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에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에 규정된 보건부 소관 식품안전 분야의 수정·보완된 행정 절차 세(03) 건을 본 결정에 첨부하여 공포한다.

제2조. 시행 효력

1.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에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 제2조 제1항 a호에 수정·보완된 한(01) 건의 행정 절차(행정 절차 코드: 1.006.424)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에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 제4조 제1항 a호에 따라 수정·보완된 두(02) 건의 행정 절차(행정절차 코드: 1.001422 및 1.001411)는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각 부처 책임자, 법제국 국장, 식품안전국 국장 및 관련 기관장과 개인은 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장관 대리서명

차관

수신처:

- 제3조와 같음
- 장관 (보고용)
- 보건부 차관 일동
- 정부사무처 행정절차관리국
- 보건부 전자 정보 포털 사이트
- 부서 사무국 행정절차관리과
- 식품안전국 웹사이트
- 보관: 식품안전국 문서보관부

도 쭈언 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소관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Q-CP호」에 규정된 식품 안전 분야의 수정·보완 행정 절차

(「2026년 6월 8일자 결정 제1644/QĐ-BYT호」에 첨부됨)

제1편. 행정 절차 목록

1. 보건부 소관 수정·보완 행정 절차 목록

번호	행정절차 문서번호	행정절차명	수정·보완·대체 내용을 규정한 법령명	분야	수행 기관
A. 중앙급 행정 절차					
1.	1.001411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수입 제품 공표 등록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에	식품 안전 및 영양	보건부 식품 안전국
2.	1.001422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국내 생산 제품 공표 등록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Đ-CP호」 (제4조 제1항 a호)	식품 안전 및 영양	보건부 식품 안전국

B. 성급 행정절차					
3.	1.006.424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광고 내용 등록	「의료 분야의 영업 조건 및 행정절차 축소·간소화와 행정절차 수행의 권한 분배에 관한 2026년 4월 29일자 결의안 제21/2026/ND-CP호」 (제2조 제1항)	식품안전 및 영양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보건 전문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전문기관

제2편. 보건부 소관 각 행정절차의 구체적 내용

A. 보건부 소관 수정·보완 행정절차

I. 중앙급 행정절차

1- 절차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수입 제품공표 등록 (1.001411)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첨가물, 보건부가 정한 바에 따라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없거나 사용 대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은 폐지한다.)
이행 절차	
	1 단계: 1.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 등록 신청서를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식품안전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조직 및 개인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생산하여 보건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주무관청의 제품공표 등록 서류 접수 권한에 동시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하거나, 각 제품의 등록 서류 접수 권한을 가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조직 및 개인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공표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품은 제외함). 등록 서류를 제출할 주무관청을 정한 후에는 추후 진행되는 추가 등록 역시 해당 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단계: 식품안전국은 21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신청서류 심사 기간은 신청서류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제출된 시점 또는 접수 기관에 도착한 시점(우편 접수 또는 직접 제출한 경우)부터 기산한다. 3 단계: 식품안전국은 조직 및 개인의 제품공표 서류를 승인하지 않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은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은 수정·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회신 문서를 발송한다.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가 발송된 날부터 90영업일이 지난 후에도 조직 및 개인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무효로 처리된다.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제품공표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그 외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시행령 제15/2018/ND-CP호」 제8조 1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 기관에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제출 직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제품공표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제품선언서 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제품을 자사의 홈페이지(웹사이트) 및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행 방식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서류 접수 기관에 직접 제출
서류 구성 및 수량	
	A 구성 서류: 1.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첨부된 부록 I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공표서. 2.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있거나 생산/수출 국가의 시장에서 자유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수출 국가의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

	(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영사 확인 필요). 3. 보건부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제 규정에 맞게 발행한 안전 기준 또는 보건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이 공표한 상응 기준 및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결과서(원본 또는 인증 사본). 4. 제품의 효능 또는 공표한 효능을 발휘시키는 성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 제품 성분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제품의 일일 복용량은 자료에 명시된 해당 성분 사용량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수입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필요하다. 제품공표 등록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는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공표 등록 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유효하여야 한다. B. 서류 수량: 01 부
처리 기한	
	21영업일
행정 절차 이행 대상	
	조직 및 개인
행정 절차 이행 기관	
	식품안전국
행정 절차 이행 결과	
	제품공표 등록 접수증
수수료 및 요금	
	수수료: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당 750,000동(「기업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면제 기준을 규정한 2025

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에 따름) - 2027년 1월 1일부터: 건당 1,500,000동 (「식품안전 업무 분야의 수수료 징수 기준, 징수·납부·관리 및 사용 제도를 규정한 2021년 8월 5일자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에 따름) 요금: 없음	
서식명	
	부록 1 제02호 서식: 제품공표서
행정 절차 요구사항 및 조건	
	1.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있거나 생산/수출 국가의 시장에서 자유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수출 국가의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영사 확인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보건부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제 규정에 맞게 발행한 안전 기준 또는 보건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이 공표한 상응 기준 및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결과서(원본 또는 인증 사본)가 있어야 한다. 4. 제품의 효능 또는 공표한 효능을 발휘시키는 성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있어야 한다. 제품 성분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제품의 일일 복용량은 자료에 명시된 해당 성분 사용량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수입제품이 건강보호식품인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필요하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1. 2010년 6월 17일자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2.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이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2018년 2월 2일자 시행령 제15/2018/NĐ-CP호 3. 식품안전 업무 분야의 수수료 징수 기준, 징수·납부·관리 및 사용 제

도를 규정한 2021년 8월 5일자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
4. 기업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면제 기준을 규정한 2025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부속서 I 서식 제1호]

(식품안전법 일부조항 세부 시행령 No.15/2018/NĐ-CP(2018.2.2)에 첨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품공표서

번호: _____

I. 제품공표 개인, 기관 정보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사업등록번호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 번호

.....

발급일 / 발급기관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한함)

II. 제품 정보

1. 제품명

2. 성분

3. 제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품질지표(건강보호식품에 한함):

4. 사용기한(유통기한)

5. 포장규격 및 포장재질

.....

6.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

III. 제품 라벨링(제품 라벨 또는 제품 예정 라벨을 첨부)

IV. 식품 안전 요건

본 기관, 개인이 제조·유통하는 식품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규정(QCVN) 제 _____호; 또는
- 관계 부처에서 제정한 시행규칙; 또는
- 지방기술규정; 또는
- 국가표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또는 지방 기술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 또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지역표준 또는 외국표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지방기술규정 및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적용); 또는
- 생산업체 자체기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지방기술규정, 국가표준, Codex 기준, 지역표준 또는 외국표준이 없는 경우 적용)

당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제품등록(공표) 신청서에 제출한 자료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또한 본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등록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만 해당 제품을 생산 및 영업할 것을 약속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기관 또는 개인 대표
(서명 및 직인)

2- 절차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국내 생산 제품공표 등록 (1.001422)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첨가물, 보건부가 정한 바에 따라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없거나 사용 대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은 폐지한다.)
이행 절차	
	1 단계: 1.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 등록 신청서를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식품안전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조직 및 개

인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생산하여 보건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주무관청의 제품선언서 등록 서류 접수 권한에 동시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하거나, 각 제품의 등록 서류 접수 권한을 가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조직 및 개인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공표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품은 제외함). 등록 서류를 제출할 주무관청을 정한 후에는 추후 진행되는 추가 등록 역시 해당 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단계:

식품안전국은 21영업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신청서류 심사 기간은 신청서류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제출된 시점 또는 접수 기관에 도착한 시점(우편 접수 또는 직접 제출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3 단계:

식품안전국은 조직 및 개인의 제품 선언 서류를 승인하지 않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은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은 수정·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회신 문서를 발송한다.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가 발송된 날부터 90영업일이 지난 후에도 조직 및 개인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무효로 처리된다.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제품 선언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그 외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시행령 제 15/2018/ND-CP호」 제 8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 기관에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제출 직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제품공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품공표 등록 신청 접수

	가 완료된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제품을 자사의 홈페이지(웹사이트) 및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행 방식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서류 접수 기관에 직접 제출
서류 구성 및 수량	
	A. 구성 서류: 1.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첨부된 부록 I 제2호 서식에 규정된 제품공표서. 2. 보건부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제 규정에 맞게 발행한 안전 기준 또는 보건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이 공표한 상응 기준 및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결과서(원본 또는 인증 사본). 3. 제품의 효능 또는 공표한 효능을 발휘시키는 성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 제품 성분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제품의 일일 복용량은 자료에 명시된 해당 성분 사용량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입제품이 건강보호식품인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필요하다. 제품공표 등록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는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공표 등록 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유효하여야 한다. B. 서류 수량: 01부
처리 기한	
	21영업일
행정 절차 이행 대상	
	조직 및 개인

행정 절차 이행 기관	
	식품안전국
행정 절차 이행 결과	
	제품공표 등록 접수증
수수료 및 요금	
	수수료: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당 750,000동 (「기업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면제 기준을 규정한 2025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에 따름) - 2027년 1월 1일부터: 건당 1,500,000동 (「식품안전 업무 분야의 수수료 징수 기준, 징수·납부·관리 및 사용 제도를 규정한 2021년 8월 5일자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에 따름) 요금: 없음
서식명	
	부록 1 제02호 서식: 제품공표서
행정 절차 요구사항 및 조건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첨부된 부록 I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공표서가 있어야 한다. 보건부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제 규정에 맞게 발행한 안전 기준 또는 보건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이 공표한 상응 기준 및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결과서(원본 또는 인증 사본)가 있어야 한다. 제품의 효능 또는 공표한 효능을 발휘시키는 성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있어야 한다. 제품 성분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제품의 일일 복용량은 자료에 명시된 해당 성분 사용량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필요하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1. 2010년 6월 17일자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2.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이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2018년 2월 2일자 시행령 제15/2018/ND-CP호 3.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수준, 징수·납부 제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 4. 기업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면제 기준을 규정한 2025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부속서 I 서식 제2호】

(식품안전법 일부조항 세부 시행령 No.15/2018/ND-CP(2018.2.2.)에 첨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품공표서

번호: _____

I. 제품공표 기관, 개인 정보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기업등록번호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 번호 발급일 / 발급기관

.....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에 한함)

II. 제품 정보

1. 제품명

2. 성분

3. 제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품질지표(건강보호식품 대상):

4. 사용기한

5. 포장규격 및 포장재
6.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III. 제품 라벨링(제품 라벨 또는 제품 예정 라벨을 첨부)

IV. 식품 안전 요건

본 기관, 개인이 제조·유통하는 식품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규정(QCVN) 제 _____호; 또는
- 관계 부처에서 제정한 시행규칙; 또는
- 지방기술규정; 또는
- 국가표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또는 지방 기술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 또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지역표준 또는 외국표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지방기술규정 및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적용); 또는
- 생산업체 자체기준(국가기술규정, 관계 부처 시행규칙, 지방기술규정, 국가표준, Codex 기준, 지역표준 또는 외국표준이 없는 경우 적용)

당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제품등록(공표) 신청서에 제출한 자료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또한 본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등록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만 해당 제품을 생산 및 영업할 것을 약속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기관 또는 개인 대표

(서명 및 직인)

3-절차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 신청 (1.006.424) (처리 기관 수정·보완: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의료 전문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
이행 절차	1 단계: 광고 대상물을 보유하는 조직 및 개인은 성급 발급 기관에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단계: 서류 접수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1 제11호 서식에 따라 결과통지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처리 기한은 신청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서류 접수기관이 신청서류에 도착 확인 도장을 찍은 날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구비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기산한다. 서류 접수기관은 조직 및 개인의 광고 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서류 접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기관은 수정·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회신 문서를 발송한다.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가 발송된 날부터 90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조직 및 개인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무효로 처리된다. 3 단계: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식품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받은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웹사이트) 및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행 방식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서류 접수 기관에 직접 제출
서류 구성 및 수량	
	A. 구성 서류: 1.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2018년 2월 2일 자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첨부된 부록 I 제10호 서식에 따른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2. 제품공표 등록 접수증 및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공표 또는 규격 적합 공표서 접수증 / 효력이 있는 식품안전 규정 적합 공표 확인서(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 3. 제품 라벨 샘플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버전)

	4. 오디오형 신문 및 비디오형 신문 광고의 경우, 광고 예정 각본과 비디오·오디오 테이프에 녹화·녹음된 내용이 필요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 예정 시안(내용 초안) (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 2부)이 필요하다. 5. 제품공표서에 기재된 제품의 효과·효능 이외의 효과·효능에 대하여 광고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조직 및 개인의 확인을 받은 사본)가 필요하다.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가 있는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B. 서류 수량: 01 부
처리 기한	
	10 영업일
행정 절차 이행 대상	
	조직 및 개인
행정 절차 이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의료 전문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
행정 절차 이행 결과	
	광고내용 확인서(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첨부된 부록 1 제11호 서식)
수수료 및 요금	
	- 수수료: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당 550,000동 (「2025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에 따름); + 2027년 1월 1일부터: 건당 1,100,000동 (「2021년 8월 5일자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에 따름). - 요금: 없음

서식명	
	광고내용 확인 신청서(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첨부된 부록 I 제10호 서식)
행정 절차 요구사항 및 조건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15/2018/ND-CP호 제27조 - 건강보호식품이어야 한다. - 현행 규정에 따른 제품공표 등록 접수증을 보유해야 한다. - 광고 내용은 제품공표서에 명시된 제품의 용도 및 효능과 일치해야 한다. 식품을 광고할 때 의료기관, 의료시설, 의사, 약사 및 의료종사자의 사진, 기기, 복장, 이름과 문서, 환자의 감사 편지 또는 의사, 약사 및 의료 종사자가 작성한 글을 사용할 수 없다. - "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글씨를 명료하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오디오형 신문 및 비디오형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다"는 경고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분량이 15초 미만인 오디오형 신문 및 비디오형 신문의 경우에는 "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다"라는 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광고 내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1. 2010년 6월 17일자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2. 2025년 6월 16일자 광고법 일부 개정법 제75/2025/QH15호에 의해 개정된 2012년 6월 21일자 광고법 제16/2012/QH13호 3.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2018년 2월 2일자 시행령 제15/2018/ND-CP호

	4. 광고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2013년 11월 14일자 시행령 제181/2013/NĐ-CP호 5. 보건 분야의 권한 위임 및 권한 분배에 관한 2025년 6월 12일자 시행령 제148/2025/NĐ-CP호 6.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 수행에 관한 2020년 4월 8일자 시행령 제45/2020/NĐ-CP호 7. 원스톱 부서 및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의 원스톱·연계형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에 관한 2025년 6월 9일자 시행령 제118/2025/NĐ-CP호 8. 원스톱 부서 및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의 원스톱·연계형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에 관한 2025년 6월 9일자 시행령 제118/2025/NĐ-CP호 일부 내용의 이행 지침에 관한 2025년 9월 15일자 시행규칙 제03/2025/TT-VPCP호 9. 보건부 소관의 특수 상품, 물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 규정에 관한 2015년 5월 25일자 시행규칙 제09/2015/TT-BYT호 10. 일부 법률 규범 문서 폐지에 관한 2026년 2월 12일자 시행규칙 제03/2026/TT-BYT호 11. 광고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2013년 12월 6일자 시행규칙 제10/2013/TT-BVHTTDL호 및 광고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2013년 11월 14일자 시행령 제181/2013/NĐ-CP호 12.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수준, 징수·납부 제도, 관리 및 사용 규정에 관한 2021년 8월 5일자 시행규칙 제67/2021/TT-BTC호 13. 기업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면제 기준 규정에 관한 2025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부속서 I 서식 제10호】

(식품안전법 일부조항 세부 시행령 No.15/2018/NĐ-CP(2018.2.2)에 첨부)

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문서번호: _____/기관약호

____1), 20__년 __월 __일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수신: _____

1. 확인 신청 기관명

.....

2. 소재지²⁾

.....

.....

전화: 팩스:

다음 제품에 대한 광고내용 확인을 신청합니다.

일련번호 호	제품명	제품공표등록 접수확인서 번호·기호	제품공표등록 접수일

광고 매체

제출 서류

.....

당사는 상기 기재한 정보 및 제출한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광고내용 확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식품 광고를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 기관에서 검토 후 광고내용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또는 법정 대표자

서명

(성명 및 직위)

직인

1) 지역명 기재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기재

【부속서 I 서식 제11호】

(식품안전법 일부조항 세부 시행령 No.15/2018/ND-CP(2018.2.2.)에 첨부)

주관기관명

광고내용 등록접수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문서번호: _____/XNQC-.....3)

_____성(시), 20__년 __월 __일

광고내용 확인서

기관 또는 개인명:

주소:

전화: 팩스:

일련번호	제품명	제품공표등록 접수확인서 번호·기호

광고 매체

.....
.....

첨부된 광고 내용은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확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관, 개인은 확인받은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 기관

(서명, 성명 기재 및 직인)

3) 광고내용 확인 기관의 약칭